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19호, 2004. 6. 28)

총 무 위 원 회

2004. 6. 29.

1. 검토 경과

가. 2004. 6. 18 : 사천시장 제출

나. 2004. 6. 19 : 총무위원회 회부

다. 2004. 6. 28 :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정례회중 제7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(총무과장 김영고)

가. 개정 이유

- 1).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법 등 3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부처 · 도 등과 연계한 혁신 · 분권 · 균형발전의 3대 과제 추진 등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선도조직인 「혁신분권담당」을 신설하고,
- 2). 하수업무의 조직 이원화로 인한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「하수담당 + 환경시설사업소」를 통합하여 「하수도사업소」로 명칭을 변경, 「하수도공기업 운영체제로 전환」함에 따라, 기능 및 운영체계에 맞게 분장사무를 조정하며,
- 3). 시정의 현안사업인 신청사 건립의 조속 추진과 진사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및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등 신도시건설(행정타운 조성)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「행정타운사업소」를 신설하고, 사업소 위치 등 제반사항과 현행 이 조례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- 1). 「혁신분권담당」신설에 따른 기획담당관 분장사무 조정(안 제4조)
 - (1) 혁신 · 분권 · 균형발전 등 총괄 조정 업무 신설
- 2). 상하수도과 「하수담당」+ 「환경시설사업소」⇒ 「하수도사업소」통합

운영함에 따른 상하수도과 명칭변경과 지역개발국장 업무 재 분장 (안 제7조)

(1) 하수담당 사업소 이관에 따른 상하수도과 명칭변경

- 「상하수도과」 → 「수도과」로 명칭변경

(2) 하수분야 공기업 전환에 따른 하수업무 지역개발국장 분장사무 삭제

- 하수도 공사 및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 ·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

(3) 공기업 재무회계규칙 등 예산관리 효율화를 위해 하수공기업 관리자를 지역개발국장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개발국장 분장업무 신설

- 하수도공기업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

3). 신청사건립과 연계한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「사업소 신설」에 따른 명칭과 위치 규정(안 별표2)

(1) 신설 사업소

- 사업소명 : 「행정타운사업소」

- 위 치 :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4-2번지

(2) 사업소명칭 변경 : 「환경시설사업소」 → 「하수도사업소」

4). 「행정타운사업소」 및 「혁신분권담당」이 한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한 설정(안 부칙)

(1) 행정타운사업소 ⇒ 2006. 12. 31 까지

5).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된 다른 조례 개정(안 부칙)

(1)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(실 →담당관)

(2)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(사회복지담당주사 →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)

3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의원 김태주)

- 본 개정조례(안)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법 등 3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부처, 도 등과 연계한 혁신, 분권, 균형발전의 3대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(혁신분권담당)
- 하수업무의 조직 이원화로 인한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하여 2개 부서의 업무를 통폐합하여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

고

(하수담당 + 환경시설사업소 = 하수도사업소)

- 신청사 건립, 진사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신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사업소를 신설하고(행정타운사업소) 이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조례로서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, 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(행자부 2001. 12. 29), 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승인(행자부, 2004. 3. 25) 등의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6. 소수 의견 : 없음